

가족돌봄청년 지원 위해 보건복지부와 초록우산이 함께합니다

- 보건복지부 ·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간 업무협약(MOU) 체결 -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(회장 황영기, 이하 '초록우산')은 11월 29일(금) 10시 30분, 이화여자대학교(서울 서대문구 소재)에서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였다.

‘가족돌봄청년’은 질병, 장애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가족을 주로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을 의미한다.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, 우울감은 7배 이상인 등 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.

* 참고: [보도자료] ‘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’ 참조(2023.4.27.일 배포)

정부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, 4개 시·도에 청년미래센터*를 설치하고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한 취약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. 또한, 청년 당사자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 지급과 함께 가족돌봄 부담 경감 및 청년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**를 제공하고 있다.

* 청년미래센터: 인천(인천사회서비스원), 울산(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), 전북(전북사회서비스원), 충북(충북기업진흥원)에서 운영 중

** 일상돌봄서비스 : 가족돌봄청년 및 서비스가 필요한 청·장년에 재가돌봄, 병원동행, 식사·영양 및 심리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

보건복지부와 초록우산은 정부의 청년지원 사업 활성화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아가자 기관 간 협업을 추진하기로 하고, 해당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.

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▲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소년 발굴 및 보건복지부 청년지원 사업으로의 연계, ▲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본인부담금 후원, ▲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.

협약에 따라 초록우산이 발굴한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재단 차원의 후원 외에도 일상돌봄 서비스 등 정부사업에 대한 안내와 연계가 이루어진다. 또한,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초록우산의 후원을 통해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이 지원되어 가족돌봄청년들이 보다 낮은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. 청소년들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초록우산의 누리집(홈페이지) 등을 통해서도 정부의 청년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진다.

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“이번 협약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을 비롯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정부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” 라며, “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며, 가족돌봄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 라고 밝혔다.

초록우산 여승수 사무총장은 “이번 업무협약은 가족돌봄 아동 및 청소년 등 취약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” 라며, “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” 라고 밝혔다.

- <붙임> 1. 업무협약식 개요
2. 업무협약서
3.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개요
4. 가족돌봄, 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사업 개요

담당 부서	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사업과	책임자	과 장	권민정 (044-202-3220)
		담당자	사무관	이지현 (044-202-3224)

☐ 추진 배경

-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
보건복지부·초록우산 간 업무협약체결 추진

☐ 행사 개요

- (행사명)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소년 지원을 위한
보건복지부-초록우산 간 업무협약식
- (일시) '24. 11. 29(금), 10:30
- (장소) 이화여자대학교 학관 201호 강의실(서울 서대문구)
- (참석)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, 초록우산
여승수 사무총장,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권민정 과장 등
- (행사내용) 협약 취지 설명, 협약서 서명, 사진 촬영 등

☐ 협약 주요 내용

- 취약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 연계 및 후원
- 취약청소년 대상 복지사업의 대국민 홍보

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소년 지원을 위한

업 무 협 약 서

보건복지부와 초록우산(이하 “협약기관”)은 민·관 협력을 기반으로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상호 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초록우산이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소년 지원강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 원칙) 협약기관은 규정을 준수하고, 호혜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3조(상호 역할)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,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 협력한다.

가. 양자는 우호 협력과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소년을 위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한다.

나. 보건복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협조한다

- ① 초록우산과의 협업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청년 지원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② 초록우산 가족돌봄아동지원사업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안내하여 취약청소년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.

다. 초록우산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협조한다.

- ①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소년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·연계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후원한다.
- ② 초록우산 홍보채널을 활용해 보건복지부 사업을 적극 홍보한다.

라. 기타 협력 필요성이 인정되는 양 기관의 사업추진에 적극 협력한다

제4조 (협약기간) 본 협약의 협약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, 기관 사이에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.

제5조 (협약의 성립 및 변경) 이 협약은 협약기관이 서명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며, 협약기관은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(비밀유지)

- ① 양자는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공개·도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양자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.

제7조(협의조정)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8조(서명 및 교환) 이 협약 체결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협약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11월 29일

보건복지부
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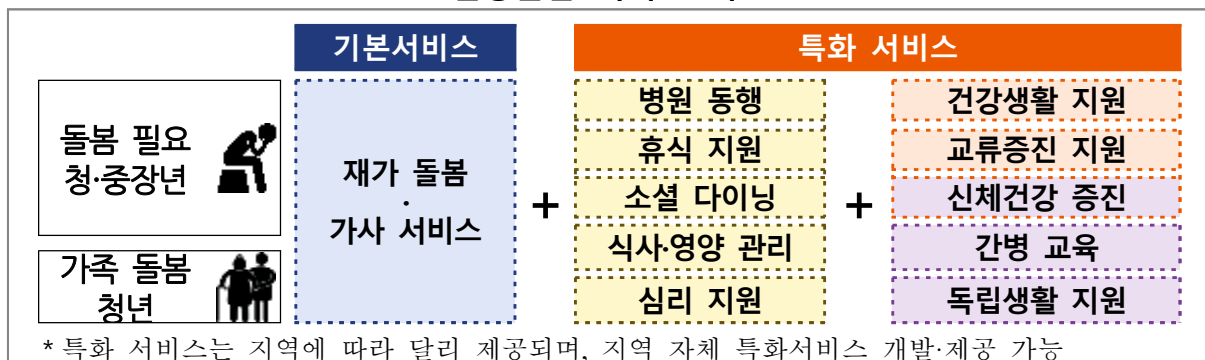
초록우산 어린이재단
사무총장

붙임3

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

- (추진배경)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중장년·청년의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,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 선호 중심의 제공체계 형성('23.8.~)
- (사업내용) ❶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(19~64세)과 ❷ 가족돌봄청년(13~39세)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
 - * (주요 사업대상) 질병·부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·중장년, 고독사 위험 중장년, 고립은둔청년, 자립준비청년, 가족돌봄청년 등
- 기본서비스(재가 돌봄·가사 서비스)와 특화서비스(식사영양관리, 심리지원, 소셜다이닝 등)로 구성,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·이용

<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>



- (이용방식)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(바우처)을 발급받은 후,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
- 기본서비스 및 특화서비스(최대 2개)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

< 서비스 이용 유형 >

구분		기본 서비스	특화 서비스
돌봄+가사	A형 (기본돌봄형)	월 36시간	1개 이용
	C형 (추가돌봄형)	월 72시간	-
가사만	B-1형 (기본가사형)	월 12시간	2개 이용
	B-2형 (추가가사형)	월 24시간	2개 이용
특화만	D형 (특화형)	-	2개 이용

-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,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(가격의 0~100%)을 내고 이용
- (추진현황) 17개 시·도(185개 시·군·구)에서 사업 시행 중

붙임4

가족돌봄, 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사업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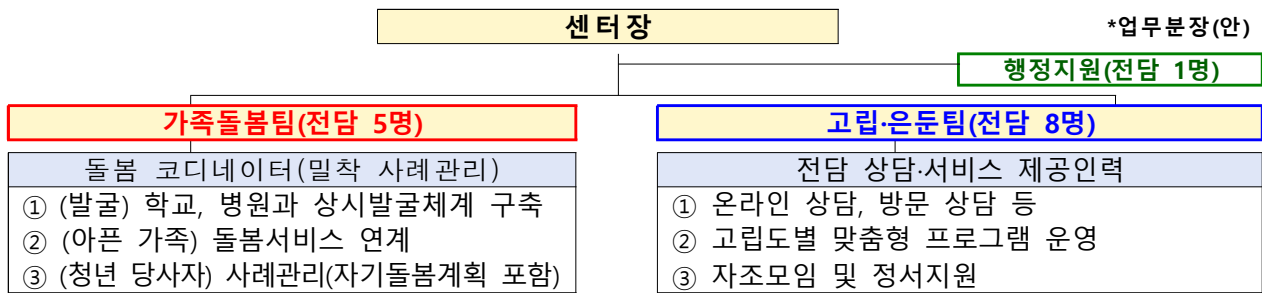
- (개요) 4개 광역시도(인천, 울산, 전북, 충북) 전담창구 통한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, 2년간('24~'25) 시범사업으로 선도모델 마련, 전국확대 추진

* (가족돌봄청(소)년) 전국 **약 10만명**(13~34세) 추정('22년)

* (고립은둔청년) 거둬들인 실패로 고립은둔 택하는 청년(19~39세) **최대 54만명** 추정('23년),

- 가족돌봄·고립은둔청년 전담발굴, 원스톱 접수 및 맞춤형 사례관리

* 민간수행기관 지정('24.6월) : (인천, 울산, 전북) 각 시도사서원 / (충북) 충북기업진흥원



* 행정지원으로 청년인턴 센터당 6명 추가 파견(복지부에서 채용, 총 24명)

- ('24년 예산) 국비 3,403백만원(70%) / 자치단체보조(30%)

- (전담인력) 총 56명(4개소 / 개소당 14명: 가족돌봄 6명, 고립은둔 8명)

□ 지원내용

- (가족돌봄청(소)년) (발굴) 지역 내 중고교·병원과 상시협력체계 구축 (아픈가족) 의료·돌봄서비스 신청대행·연계 (청년)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*

* 전담인력이 현금지원과 연계해 자기발전계획 함께 작성, 아픈 가족을 위한 복지·돌봄서비스 외에도 교육장학금·금융·주거·법률·일자리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

- (자기돌봄비)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 선정(960명), 우리카드 先포인트 지급(자기발전계획에 따른 지급여부 월별 확인)

* 자기돌봄비 지급 관리체계 구축 관련 우리카드社와 업무협약 체결(5.2)

- (고립은둔청년) (온라인 자가진단) 초기상담 후 고립정도에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*

* 자조모임, 심리상담 및 가족관계 회복, 공동생활, 소통기술 습득, 간단한 일경험 등